

1. 개요

(1) 제정목적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KT&G”)는 모든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고 대우하며, 안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고, 환경적 책임과 윤리적으로 비즈니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KT&G 공급망에 포함되는 파트너사 및 그들의 파트너사들도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기를 기대하고, 이를 위하여 KT&G 파트너사 행동규범(이하 “본 행동규범”)을 제정하였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전 파트너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관행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KT&G는 파트너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여 사회로부터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파트너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ILO 및 ISO 등의 다양한 글로벌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추가 정보로 활용하였습니다.

(2) 적용범위

본 행동규범은 KT&G(해외 지점 및 법인 포함)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공급망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행동규범의 적용 대상인 파트너사는 그들의 파트너사(하위 파트너사)에게 본 행동규범을 인정하고 실행할 것을 요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파트너사 책임과 역할

KT&G의 모든 파트너사는 경영의사결정 및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행동규범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KT&G는 파트너사가 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파트너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점검 및 실사는 KT&G 또는 KT&G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OECD 실사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이러한 점검 및 실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KT&G는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파트너사는 개선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본 행동규범은 파트너사의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KT&G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 및 향후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은 KT&G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KT&G의 노력

KT&G는 파트너사와 거래 계약 체결 시 본 행동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공급망 실사 및 ESG 컨설팅을 통해 본 행동규범의 준수를 강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트너사 및 파트너사의 근로자가 KT&G와의 거래 관계 및 사업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비윤리행위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제보자의 의사에 따라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2. 인권 및 노동

파트너사는 고용 및 근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근로자를 존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는 임시직, 이주노동자, 학생, 계약직, 정규직 등 모든 유형의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1) 강제노동 금지

모든 근로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파트너사는 근로자의 이직 또는 퇴직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채용 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노동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2) 아동근로 금지

파트너사는 15세 미만 또는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 가능한 최저 연령 미만의 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장 실습생 제도 운영 시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근로자가 안전 및 보건 관점에서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 내에서 15세 미만 아동의 근로가 발견될 경우, 아동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아동의 의사에 따라 의무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파트너사는 승진, 보상, 훈련 기회제공 등 고용에 있어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성향, 민족, 장애, 임신, 종교, 정치 성향, 국적, 결혼여부 등을 근거로 괴롭히거나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파트너사는 임금의 지급 및 복리후생 제도 운영에서 임직원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임직원의 모집, 채용 시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조건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4) 인도적 대우

파트너사는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 성적학대, 체벌, 정신적, 신체적 강압, 폭언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5) 근무시간 준수

파트너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해당 국가 및 지역의 법규에 의해 정의된 근로 일수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에 따라 초과근무를 포함한 최대 근무시간은 주당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초과근무는 근로자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하게 초과근무가 발생하는 경우 현지 법규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1주에 최소 1일 이상의 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6) 급여 및 복리후생

파트너사는 급여 지급 시 최저임금, 초과 근로수당 등 법으로 정해진 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임금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임금은 정해진 일자에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 내역에 대한 급여명세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7) 단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파트너사는 근로자의 단체 결사, 단체 교섭, 대표선출 등 법규에 따른 근로자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별대우, 보복조치, 위협행위, 괴롭힘의 두려움 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경영진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보건 및 안전

파트너사는 보건 및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A. 보건 및 안전허가

파트너사는 필요한 보건 및 안전 관련 허가서를 취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 및 신고/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B. 건강검진 제공

파트너사는 근로자에게 정기 건강검진을 제공해야 하며, 작업장 특성이 요인이 되어 발생하

는 질병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질병에 대한 추가검사 지원 및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합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C. 휴게 공간 제공

파트너사는 충분한 면적의 근로자 휴게 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해당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합니다.

D. 기숙사 관리

파트너사가 제공하는 근로자 기숙사는 청결 및 안전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을 만족하며, 합리적인 출입 권한과 개인 공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안전관리

파트너사는 근로자가 화학적, 생물학적, 물리적 안전 위험 요인에 노출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적절한 설계, 공학적 제어, 행정적 제어, 설비 안전검사, 작업절차, 작업공간 내 사고위험 및 유해인자에 대한 교육을 마련하고, 이런 수단으로 위험 요소를 충분히 통제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개인 보호장비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식별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안전 위험성 평가를 진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 및 안전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합니다.

(3) 비상상황 대응

파트너사는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급 상황을 식별하고, 각 상황에서 생명, 환경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비상 계획 및 대응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야 하며,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비상대피로 및 유도등을 부착 및 관리해야 합니다. 화재 감지기 및 경보기, 소방시설은 법규에 따라 설치하여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4) 사고 및 상해 관리

파트너사는 모든 고용인 및 현장 계약업체 근로자에 대해 법규에 따라 사고 및 상해가 없는 작업 환경을 창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및 중대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직원 대피 및 병원 이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파트너사는 산업 재해 및 직업병이 발생할 경우, 상황 보고 및 원인 추적, 개선방안 수립 및 조치를 위한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합니다.

4. 환경

파트너사는 제조 활동 시 재생 절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지역사회 및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실시하며, 환경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환경경영체계 구축

파트너사는 환경경영 실천 체계를 마련하고 환경성과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이를 기반으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2) 환경 허가 및 신고

파트너사는 모든 필수 환경 허가, 승인, 등록을 획득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하고, 운영 및 신고/보고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유해물질 관리

파트너사는 환경오염의 위험이 있는 화학물질 및 기타물질들을 파악하고, 해당 물질의 취급, 이동, 저장, 사용, 재사용, 재활용, 폐기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을 사용 및 보관하는 장소와 소분용기에는 화학물질의 정보와 유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합니다.

(4) 자원 사용 저감

파트너사는 공정개선, 원료대체, 보존, 재료 재활용 및 재사용 등 개선노력을 통해 폐수와 폐에너지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폐기물을 근본적으로 감소 및 제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관리

파트너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유형의 폐기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관리 및 처리한 뒤 배출하고 폐기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폐기물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수자원 관리

파트너사는 사업장이 위치한 국가 및 지역 법규 기준에 따라 사용 및 배출하는 수자원을 관리해야 합니다. 용수 사용량과 폐수 배출량, 수질오염물질 현황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7)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파트너사는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해야 하며, 감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5. 윤리

파트너사는 비즈니스 활동에서 정직성, 성실성과 공정성을 준수하여야 하며 엄격한 윤리적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1) 비즈니스 청렴성

파트너사는 모든 거래관계에 있어 최고 수준의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고, 부적절한 금전 또는 선물제공 등 어떠한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부패, 부당이득,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는 엄격히 금지해야 합니다.

(2) 윤리실천특별약관 준수

파트너사는 KT&G의 '윤리실천특별약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구매규정 및 윤리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 보호

파트너사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합당한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4) 내부고발자 보호

파트너사는 근로자의 고충 또는 비윤리 행위를 신고 및 제보 가능한 채널을 운영해야 합니다. 해당 채널은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복조치 등의 불이익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5) 정보보호

① 파트너사는 사업운영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업무 수행 시 취득한 정보는 고객사 및 거래업체의 사전 허가 및 승인없이 보관 및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② 파트너사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모든 사람(파트너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 포함)의 개

인정보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등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6) 책임 있는 원자재 구매

파트너사는 구매하는 원자재, 광물, 부품, 제품 등이 생산 및 유통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환경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유통되는 원자재, 광물, 부품, 제품의 원산지 및 출처를 파악해야 하며, 특히 주석, 탄탈륨, 텅스텐, 금(3TG)의 경우 콩고민주 공화국 또는 주변 분쟁지역에서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취득되지 않았는지 추적관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